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정권고)

### □ 민원 제목 : 봉안당 설치 신고수리 취소 시정 요구

#### □ 신청 취지

- 2020년 ○월 ○○일 ○○군 ○○면 ○○리 ○○○-○ 종교용지에 ○○○(현. ○○○) 명의로 봉안당 설치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신청인이 2022년 ○○월경 봉안당 설치 변경신고 관련 문의 중 피신청인이 최초 신고 수리에 하자를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2023년 ○월경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통보하였으며
- 이에 신청인은 2023년 ○월 ○○일자로 현. ○○○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였으며 의견제출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취소 처분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여 처분이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신고에 있어서 보완의 경우는 행정처분 이전, 신고 신청 당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안은 수리 이후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 이후 새로운 신고가 필요하며,
- 신청인에게 해당 신고사항 이행통지(수리) 취소 후에 요건을 갖춘 새로운 신고로 신청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 □ 사실관계

- 2020. ○. ○○.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 2022. ○○. : 종교단체 봉안당 변경신고 관련 문의 중 수리

(이행사항) 하자 발견

- 2023. ○. ○○.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2023. ○. ○○. : 신청인 의견 제출
- 2023. ○. ○○. : ○○사(구. ○○사)로 소유권 변경 등기 완료

#### □ 관계 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행정절차법」 제4조

#### □ 판단 및 결론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 135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행정절차법」 제4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므로 행정청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 신청인에게 행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합의)

### □ 민원 제목 : ○○○ 주차장 공사로 인한 우수 피해방지 요청

#### □ 신청 취지

- 피신청기관에서 ○○○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호우시 기존 배수 관로에 우수가 집중되어, 신청인의 영업장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배수공사 개선 및 침수방지 대책을 요청

####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배수로 정비 요청에 대하여 ○○○ 주차장 공사 후에는 우수 영향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 관측 후 범람 시 배수로 정비를 적극 검토하기로 수차례 답변하였으며
- 배수계획상 주차장 부지 내 대부분의 우수는 도로 우수관으로 배수하고, 폭우 대비 일부 구간의 우수를 인근 집수정으로 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민원인의 요구로 배수로가 차단됨.

####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이 2023년 2월부터 ○○군 ○○면 ○○○ 주차장 공사를 하는 중에 2023년 7월 ○○일 호우로 주차장 하류부에 위치한 신청인의 영업장 마당이 침수되었으며
- 당초 신청인의 영업장과 기존 주차장은 높이차가 없었으나, ○○○ 주차장 공사는 기존 주차장에 흙을 성토하여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신청인의 영업장보다 주차장이 1m 이상 높아졌고 경계부 배수계획이 미흡하여 우수가 넘쳐 신청인의 영업장으로 흘러감.

#### □ 관계 법령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 □ 판단 및 결론

- 피신청인의 기존 ○○○ 주차장을 성토하여 정비하는 것을 보고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우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사 이후 배수 상황을 보고 추가 배수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공사를 추진하던 중 집중호우로 신청인의 영업장이 침수되었으며
- 현장간담회를 통해 ○○○ 주차장 공사 추진사항 및 영업장 침수 정황으로 배수 개선공사가 필요함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감
- 피신청인은 ○○○ 주차장 공사에 따른 신청인의 영업장 침수를 방지하고 ○○○ 주차장 일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추가 배수 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신청인은 추가 배수 관로 공사에 필요한 신청인의 사유지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것으로 합의